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79호

**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세운3-4,5구역, 세운6-3-4구역) 변경 결정
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7-260호(2007.7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1단계 구간) 및 지형도면 고시, 제2009-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제2009-378호(2009.9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(세운5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89호(2014.11.1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304호(2015.10.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62호(2016.3.3.)로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03호(2016.4.7.)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1호(2017.1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94호(2017.11.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38호(2017.11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77호(2018.6.7.)로 재정비촉진계획[기반시설계획]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79호(2018.9.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86호(2019.3.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85호(2019.6.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11호(2019.7.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70호(2020.5.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49호(2020.10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10호(2021.3.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564호(2021.10.1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6호(2022.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8일

서울특별시장

①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
1.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요(변경없음)

지 구 명 (지구유형)	위 치	면 적 (㎡)			개발기간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세운재정비촉진지구 (중심지형)	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	439,356.4	-	439,356.4	2006.10 ~ 2023.12

2.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
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

구 분		면 적(m ²)			비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439,356.4	—	439,356.4	100.0	—
계획 기반 시설	소 계	158,312.1	—	158,312.1	36.0	—
	공공청사	7,600.0	—	7,600.0	1.7	중구청 존치
	학교시설	13,055.1	—	13,055.1	3.0	덕수중학교 존치
	하 천	8,423.4	—	8,423.4	1.9	청계천
	광 장	—	—	—	—	—
	공 원	10,108.6	—	10,108.6	2.3	4개소
	녹 지	7,298.8	—	7,298.8	1.7	—
	연구시설	1,198.7	감) 1,198.7	—	—	연구시설 1개소 폐지
	주차장	—	증) 1,198.7	1,198.7	0.3	주차장 1개소 신설
	공공공지	—	—	—	—	—
	도 로	110,627.5	—	110,627.5	25.2	—
택지 (획지)	소 계	281,044.3	—	281,044.3	64.0	—
	복합개발용지	254,161.3	—	254,161.3	57.9	—
	남산자이(주거복합)	5,216.5	—	5,216.5	1.2	존 치
	국도호텔(상업:숙박)	1,800.0	—	1,800.0	0.4	
	중앙테크플라자	1,060.6	—	1,060.6	0.2	
	명보아트홀	1,256.5	—	1,256.5	0.3	
	매일경제신문	1,778.4	—	1,778.4	0.4	
	세운상가군	15,771.0	—	15,771.0	3.6	

※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

※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 ~ 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

② 인구·주택 수용계획 : 변경없음

③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: 변경

㉔ 도로계획(변경)

㉔ 도로(변경없음)

㉔ 보행자전용도로(변경)

- 세운상가군 보행데크와 주변 촉진구역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

㉔ 주차장(신설)

-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필지를 고려하여 공공주차장 신설
- 주차장 복합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 증진 도모
 - 지하 : 주차장
 - 지상 : 비도시계획시설(산업앵커시설)

㉔ 공원 및 녹지(변경없음)

㉔ 학교(변경없음)

㉔ 공공청사(변경없음)

㉔ 기타(변경없음)

④ 공원·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: 변경없음

- ⑤ 교통계획 : 변경
- ㉔ 교통개선대책(변경)
- 주차시설(변경)
 - 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·복합화를 통한 공공주차장 확보 검토(금회 신설)
- ※ 교통계획 교통개선대책 주차시설 외 개재 생략(변경없음)
- ⑥ 경관계획 : 변경없음
- ⑦ 광고물 관리계획,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: 변경없음
-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-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: 변경없음
-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: 변경없음
-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: 변경없음
- ⑫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-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: 변경없음
-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: 변경없음
- ⑮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
- ㉕ 용도지역·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④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)(변경)
- ㉑ 교통시설(변경)
- ㉒ 도로(변경)
-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126	4~19	집산 도로	850	종로3가 45-4	충무로4가 125	일반 도로	-	서울시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삼풍상가-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(폭3.0m~15.0m)
변경	중로	2	126	4~19	집산 도로	850	종로3가 45-4	충무로4가 125	일반 도로	-	서울시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소로3-28 중복결정(L=4m)
기정	중로	3	3	12	국지 도로	244	인현동2가 134-3	을지로4가 267-1	일반 도로	-	서울시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(A=55㎡)
변경	중로	3	3	12	국지 도로	244	인현동2가 134-3	을지로4가 267-1	일반 도로	-	서울시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소로3-29 중복결정(L=12m)
신설	소로	3	28	6	특수 도로	8	산림동 233-1	산림동 233-1	보행자 전용 도로	-	-	중로2-126 중복결정 (L=4m) 입체적결정 (L=4m)
신설	소로	3	29	6	특수 도로	17	인현동2가 239-6	인현동2가 159-4	보행자 전용 도로	-	-	경관독지4 중복 결정(L=1m) 중로3-3 중복결정 (L=12m) 입체적결정 (L=4m)

※ 금회 결정(변경) 조서 외 게재생략

※ 중복결정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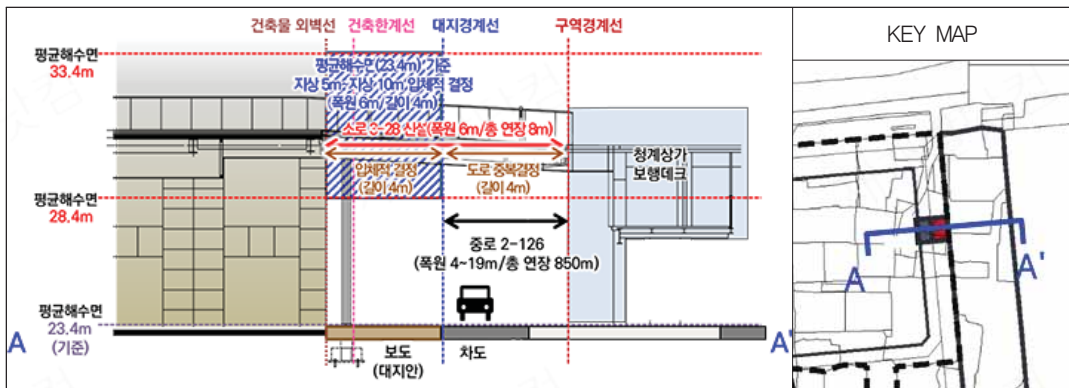
■ 도로 입체적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 후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소로 3-28	산림동 233-1	길이	—	증) 4m	4m	—	소수점 반올림
			폭	—	증) 6m	6m		
			높이	도시계획시설	—	지상5m~ 지상10m		
				비도시계획시설	—	지상5m미만, 지상10m초과		
신설	소로 3-29	인현동2가 159-4	길이	—	증) 4m	4m	—	소수점 반올림
			폭	—	증) 6m	6m		
			높이	도시계획시설	—	지상4m~ 지상9m		
				비도시계획시설	—	지상4m미만, 지상9m초과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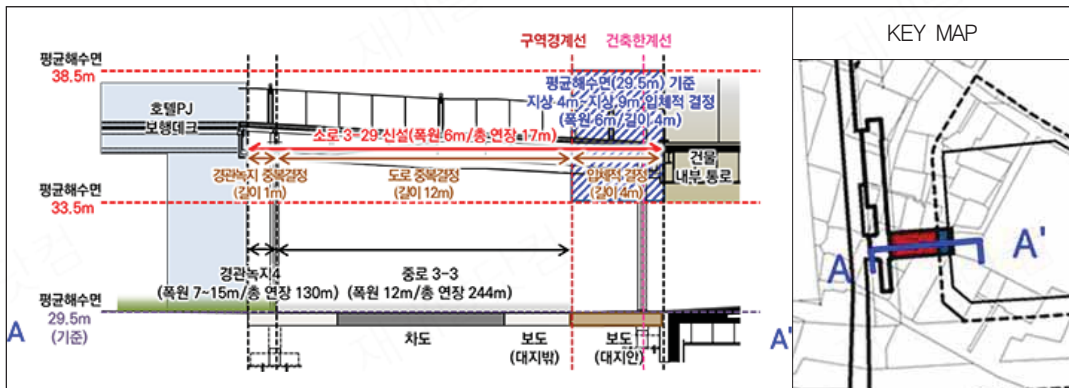
※ 산림동 233-1 평균 해수면 23.4m 기준 지상 5m(평균 해수면 28.4m)~지상 10m(평균 해수면 33.4m)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, 평균 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성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※ 인현동2가 159-4 평균 해수면 29.5m 기준 지상 4m(평균 해수면 33.5m)~지상 9m(평균 해수면 38.5m)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, 평균 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성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소로3-28) 단면도

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소로3-29) 단면도

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126	중로2-126	○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- 소로3-28(L=4m)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와 3-4,5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중로3-3	중로3-3	○ 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- 소로3-29(L=12m)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호텔PJ 동측 보행데크와 6-3-4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-	소로3-28	○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- L = 8m, B = 6m ○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- 중로2-126(L=4m) ○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 입체적 결정 - 산림동 233-1(L=4m)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와 3-4,5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-	소로3-29	○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- L = 17m, B = 6m ○ 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- 경관녹지4(L=1m) - 중로3-3(L=12m) ○ 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입체적 결정 - 인현동2가 159-4(L=4m)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호텔PJ 동측 보행데크와 6-3-4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
⑥ 철도(변경없음)

⑦ 주차장(신설)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주차장	중구 예관동 52-11번지 일원	-	증) 1,198.7	1,198.7	-	공간적 범위 결정

■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공간적 범위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구분	기정	변경		
신설	1	주차장	중구 예관동 52-11번지 일원	면적 (㎡)	-	지상1층 40㎡ 이상 지하층 200㎡ 이상	○ 주차장 - 지상1층 40㎡ 이상 - 지하층 200㎡ 이상 ○ 비도시계획시설 - 주차장(지상1층 일부, 지하층 일부)을 제외한 모든 구간	-
				총	-	지상1층 일부, 지하층 일부		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주차장	○ 주차장 신설 - A = 1,198.7㎡ ○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 - 지상1층 일부(40㎡ 이상) - 지하층 일부(200㎡ 이상)	○ 기부채납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 계획시설 용도 변경(연구시설→주차장) 및 복합화

㉠ 공간시설 (변경)

④ 녹지(변경)

■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4	녹지	경관녹지	인현동2가 57-3	2,184.87	-	2,184.87	서울시 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소로3-29 중복결정 (L=1m)

※ 중복결정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■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녹지	○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- L = 1m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호텔PJ 동측 보행데크와 6-3-4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
⑤ 공원(변경없음)

㉡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)

④ 학교(변경없음)

⑤ 연구시설(변경)

■ 연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	연구시설	중구 예관동 52-11번지 일원	1,198.67	감) 1,198.67	-	서울시 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-

■ 연구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연구시설	○ 시설 폐지 - A : 1,198.67㎡	○ 기부채납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(연구시설→주차장) 및 복합화

㉢ 공공청사(변경없음)

㉣ 방재시설(변경없음)

④ 하천(변경없음)

※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: 생략 (재정비촉진계획 도서와 같음)

② 세운재정비촉진구역(세운 3-4,5구역) 정비계획 변경

1. 정비구역(변경없음)

가. 촉진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2. 정비계획(변경)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나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다. 도시계획시설(설치)계획(변경)

① 교통시설(변경)

■ 도로(변경)

•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126	4~19 (4)	집산 도로	850 (190)	종로3가 45-4	충무로4 가 125	일반 도로	-	서울시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삼풍상가 ~ 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(폭3.0m~15.0m)
변경	중로	2	126	4~19 (4)	집산 도로	850 (190)	종로3가 45-4	충무로4 가 125	일반 도로	-	서울시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소로3-28 중복결정(L=4m)
신설	소로	3	28	6	특수 도로	8	산림동 233-1	산림동 233-1	보행자 전용 도로	-	-	중로2-126 중복결정(L=4m) 입체적결정(L=4m)

※ 금회 결정(변경) 조서 외 게재생략

※ ()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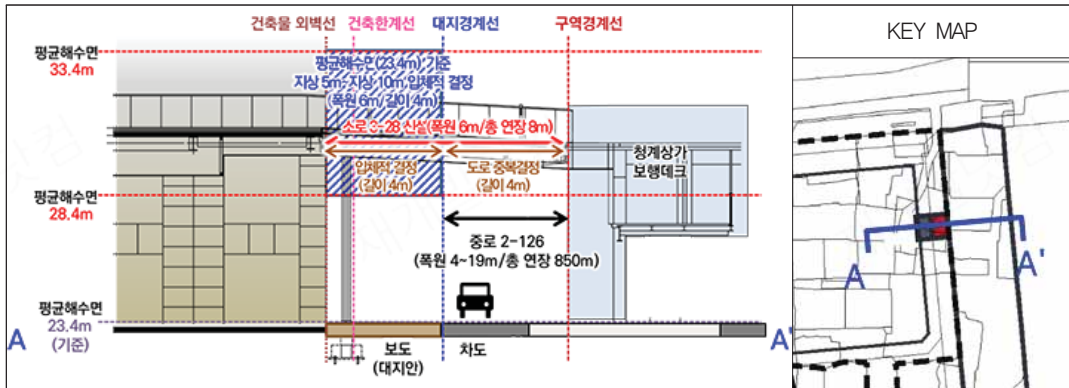
※ 중복결정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• 도로 입체적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구 분		기정	변경	변경 후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소로 3-28	산림동 233-1	길이		-	증) 4m	4m	-	소수점 반올림
			폭		-	증) 6m	6m		
			높이	도시계획시설	-	지상5m~ 지상10m	지상5m~ 지상10m		
				비도시계획시설	-	지상5m미만, 지상10m초과	지상5m미만, 지상10m초과		

※ 산림동 233-1 평균 해수면 23.4m 기준 지상 5m(평균 해수면 28.4m)~지상 10m(평균 해수면 33.4m)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, 평균 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•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소로3-28) 단면도



•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126	중로2-126	○ 청계사가 서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- 소로3-28(L=4m)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계사가 서측 보행데크와 3-4,5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-	소로3-28	○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- L = 8m, B = 6m ○ 청계사가 서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- 중로2-126(L=4m) ○ 청계사가 서측 보행데크 입체적 결정 - 산림동 233-1(L=4m)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계사가 서측 보행데크와 3-4,5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
② 공간시설(변경없음)

■ 공원(변경없음)

- 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해당사항 없음)
- 마. 건축물의 배치, 형태,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바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(변경없음)
- 사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아. 정비사업 시행 계획(변경없음)
- 자.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: 보호수 없음(변경없음)
- 차.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카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타. 세입자 대책(변경없음)

③ 세운재정비촉진구역(세운 6-3-4구역) 정비계획 변경

1. 정비구역(변경없음)

가. 촉진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2. 정비계획(변경)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(6-3-4구역)		6,500.03	－	6,500.03	100.0	－
도시계획 시 설 등	소계	3,122.82	－	3,122.82	48.0	－
	도로	195.39	－	195.39	3.0	－
	공원	1,316.40	－	1,316.40	20.3	소공원
	녹지	412.37	－	412.37	6.3	경관녹지
	연구시설	1,198.67	감) 1,198.67	－	－	폐지
	주차장	－	증) 1,198.67	1,198.67	18.4	신설
택 지 (획 지)	소 계	3,377.21	－	3,377.21	52.0	－
	획 지1	3,377.21	－	3,377.21	52.0	－

나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다. 도시계획시설(설치) 계획(변경)

① 교통시설(변경)

■ 도로(변경)

•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3	29	6 (6)	특수 도로	17 (4)	인현동2가 239-6 (인현동2 가 159-4)	인현동2가 159-4	보행자 전용도로	—	—	경관녹지4 중복 결정 (L=1m) 중로3-3 중복 결정 (L=12m) 입체적 결정 (L=4m)

※ 금회 결정(변경) 조서 외 게재생략

※ ()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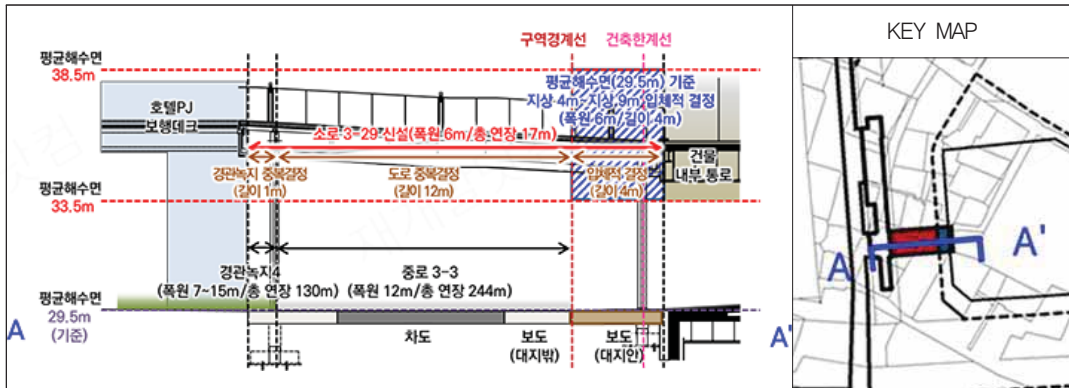
※ 중복결정 면적은 추후 측량성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• 도로 입체적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 후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소로 3-29	인현동2가 159-4	길이	—	증) 4m	4m	—	소수점 반올림
			폭	—	증) 6m	6m		
			높이	도시계획시설	지상4m~ 지상9m	지상4m~ 지상9m		
				비도시계획시설	지상4m미만, 지상9m초과	지상4m미만, 지상9m초과		

※ 인현동2가 159-4 평균 해수면 29.5m 기준 지상 4m(평균 해수면 33.5m)~지상 9m(평균 해수면 38.5m)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, 평균 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성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•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소로3-29) 단면도



•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3-29	○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- L = 17m, B = 6m ○ 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- 경관녹지4(L=1m) - 중로3-3(L=12m) ○ 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입체적 결정 - 인현동2가 159-4(L=4m)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호텔PJ 동측 보행데크와 6-3-4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
■ 주차장(신설)

•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주차장	중구 예관동 52-11번지 일원	-	증) 1,198.7	1,198.7	-	공간적 범위 결정

•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공간적 범위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구분	기정	변경		
신설	1	주차장	중구 예관동 52-11번지 일원	면적 (㎡)	-	지상1층 40㎡ 이상 지하층 200㎡ 이상	○ 주차장 - 지상1층 40㎡ 이상 - 지하층 200㎡ 이상 ○ 비도시계획시설 - 주차장(지상1층 일부, 지하층 일부)을 제외한 모든 구간	-
				층	-	지상1층 일부, 지하층 일부		

•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주차장	○ 주차장 신설 - A = 1,198.7㎡ ○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 - 지상1층 일부(40㎡ 이상) - 지하층 일부(200㎡ 이상)	○ 기부채납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 계획시설 용도 변경(연구시설→주차장) 및 복합화

② 공간시설(변경)

■ 녹지(변경)

•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4	녹지	경관녹지	인현동2가 57-3	2,184.87 (412.37)	-	2,184.87 (412.37)	서울시 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소로3-29 중복결정 (L=1m)

※ ()는 측진구역 내 면적임

※ 중복결정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•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녹지	○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- L = 1m	○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호텔PJ 동측 보행데크와 6-3-4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

■ 공원(변경없음)

③ 공공문화체육시설(변경)

■ 연구시설(변경)

• 연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	연구시설	중구 예관동 52-11번지 일원	1,198.67	감) 1,198.67	-	서울시 고시 제2014-119호 (2014.3.27)	-

• 연구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연구시설	○ 시설 폐지 - A : 1,198.67㎡	○ 기부채납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(연구시설→주차장) 및 복합화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해당사항 없음)

마. 건축물의 배치, 형태,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바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(변경없음)

사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아. 정비사업 시행 계획(변경없음)

자.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: 보호수 없음(변경없음)

차.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카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타. 세입자 대책(변경없음)

④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－ 세운재정비촉진지구

■ 촉진지구 결정도 (변경없음)

■ 촉진구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■ 토지이용계획도 (기정, 변경)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기정, 변경)

■ 촉진계획 결정도 (기정, 변경)

－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기정, 변경)

■ 촉진계획 결정도 (기정, 변경)

－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기정, 변경)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(기정, 변경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서류(지형도면 포함) : 생략 (비치도서와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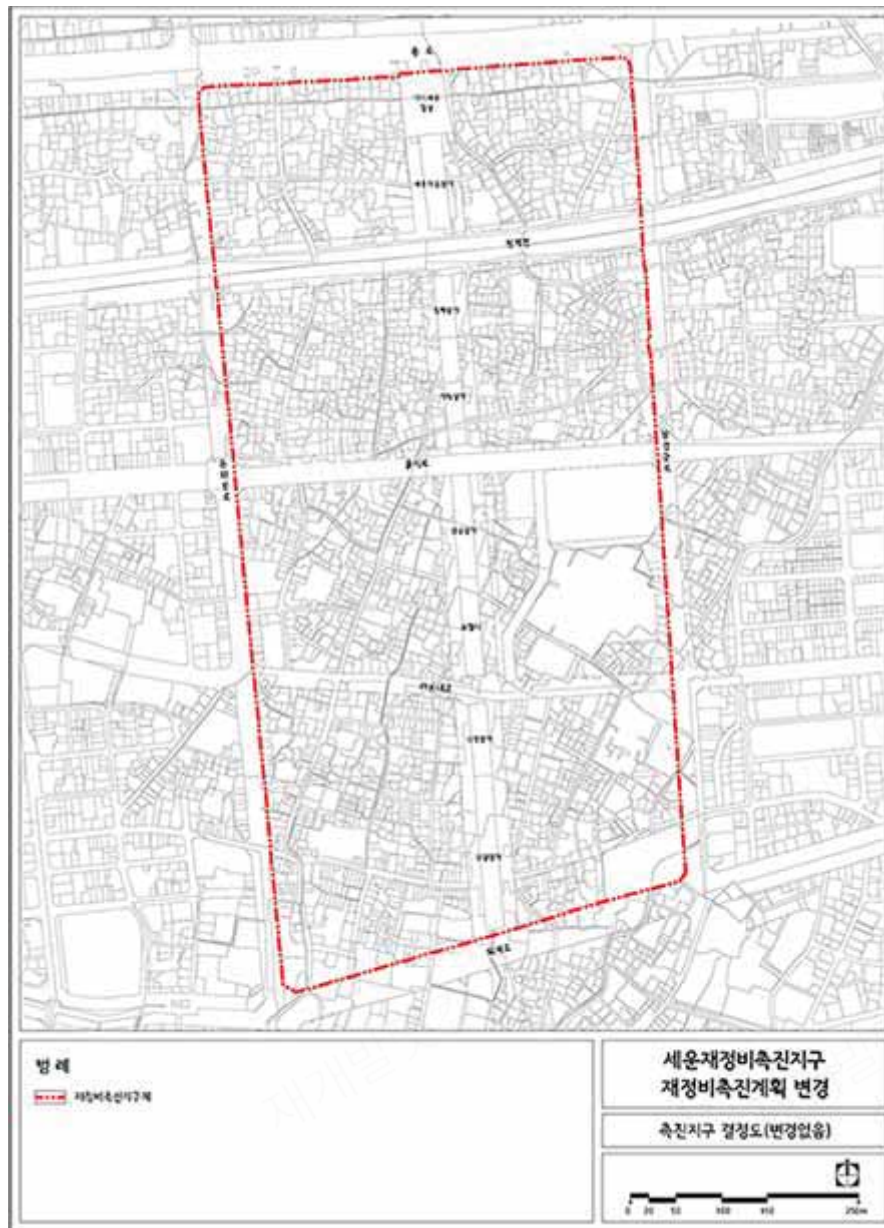
⑥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(02-2133-4649) 및
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02-3396-5735)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
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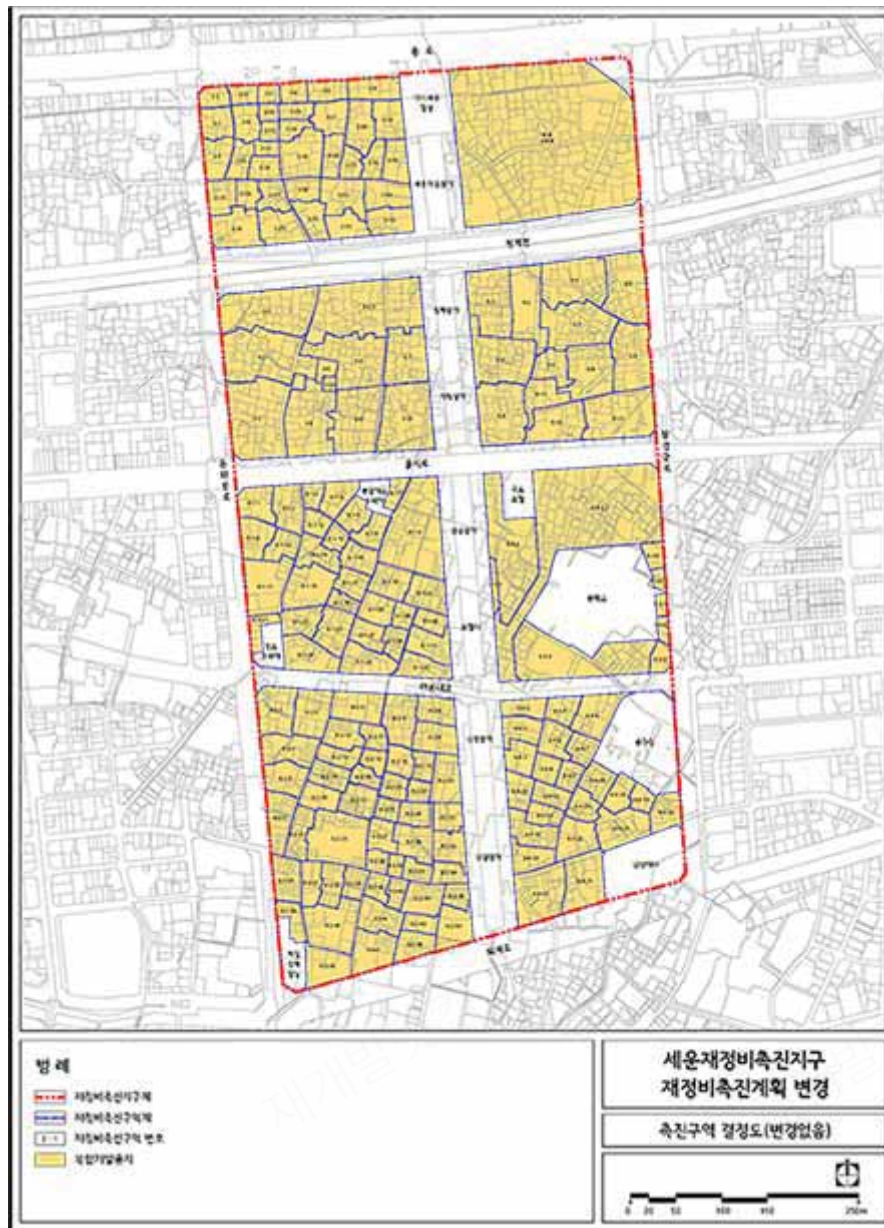
(이하여백)

- 세운재정비촉진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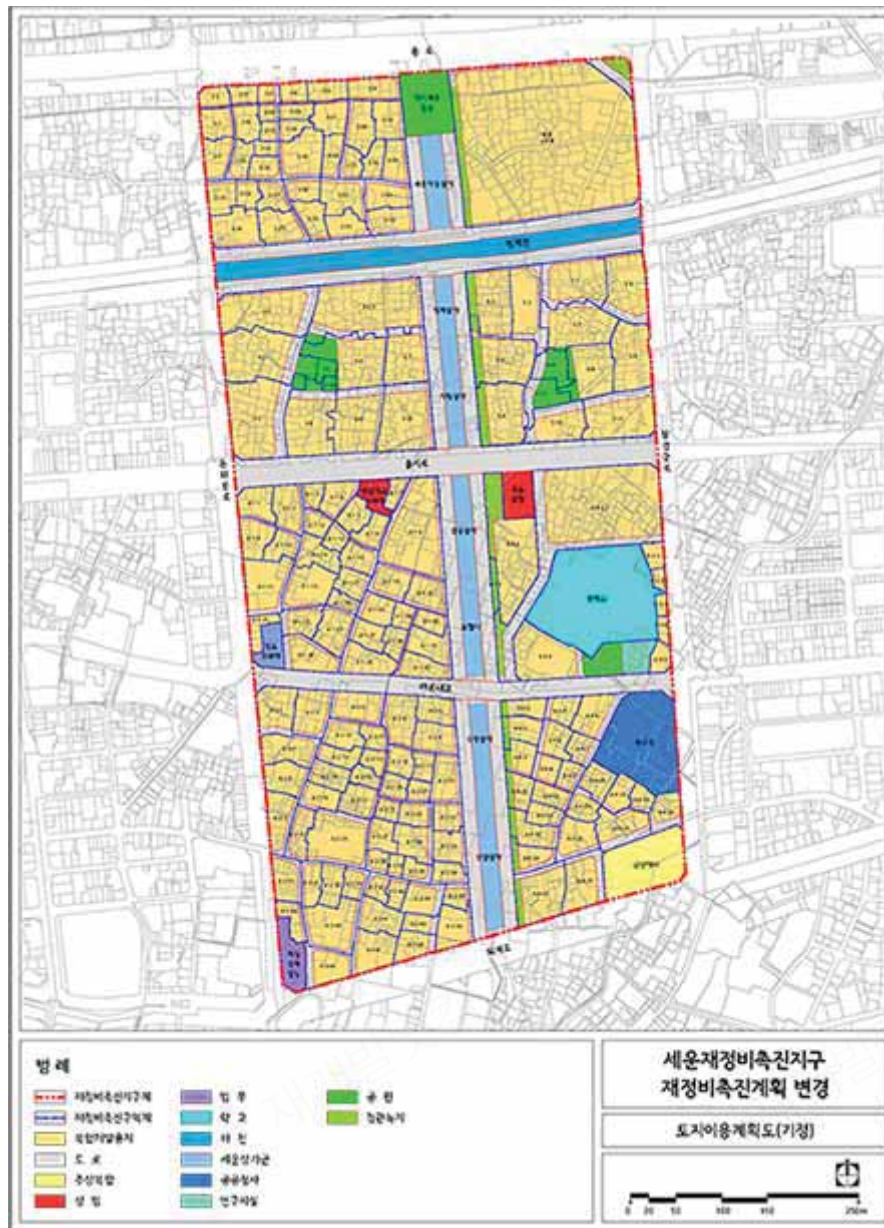
■촉진지구 결정도 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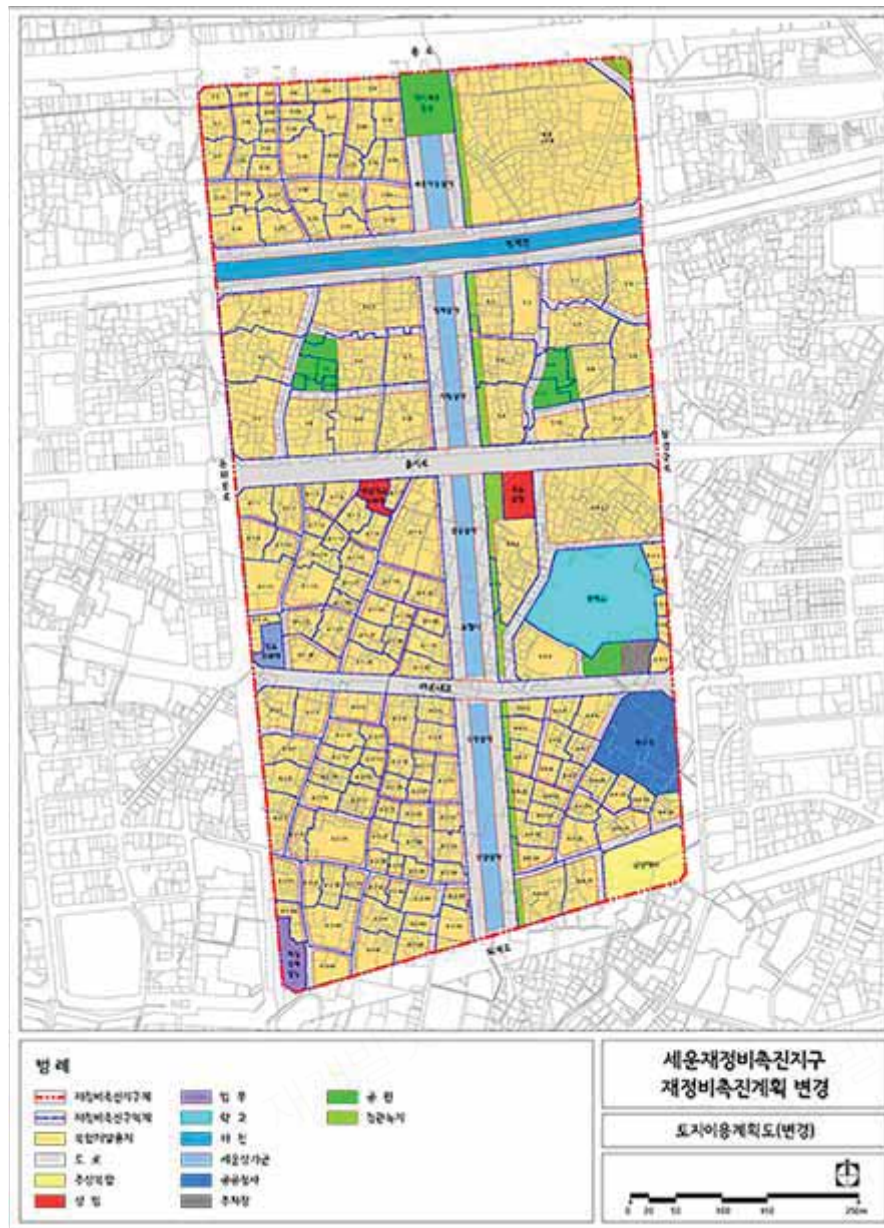
■ 촉진구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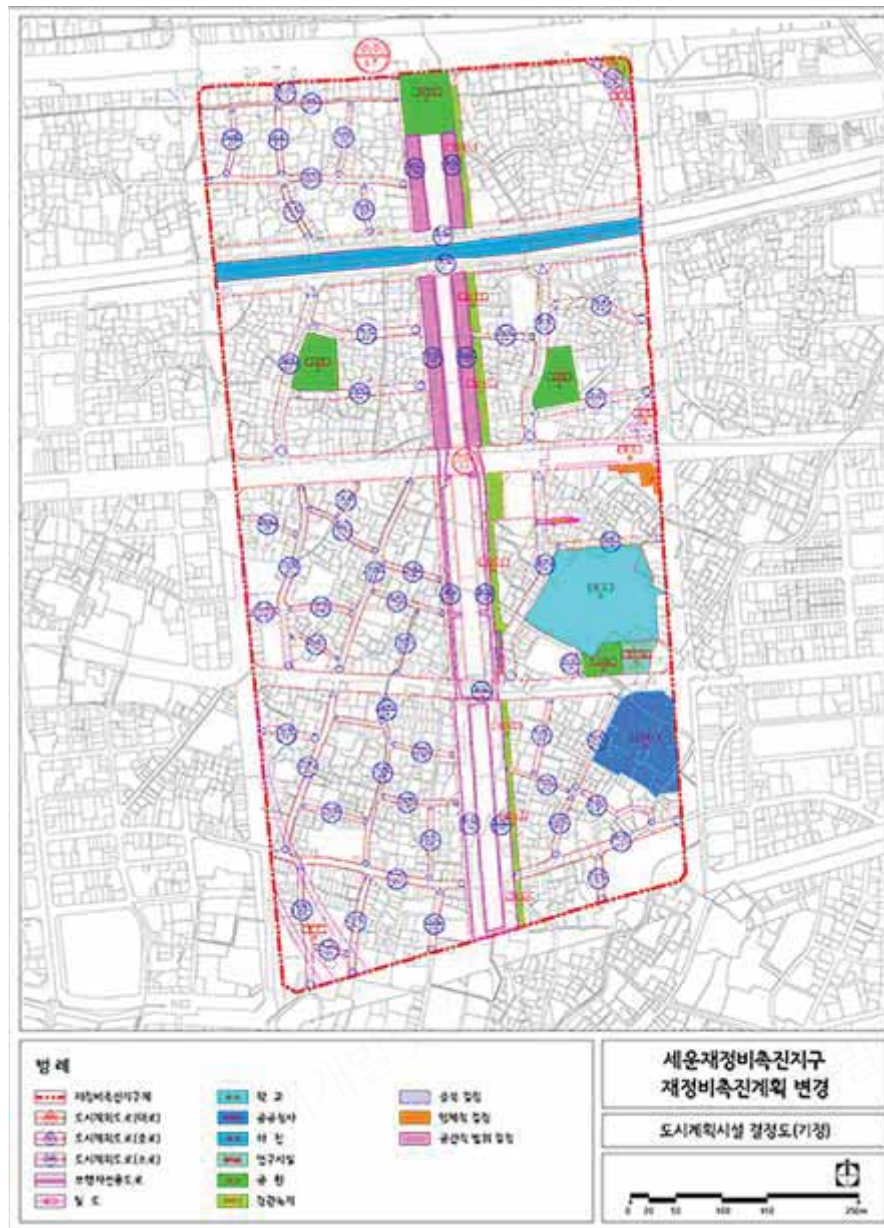
■ 토지이용계획도 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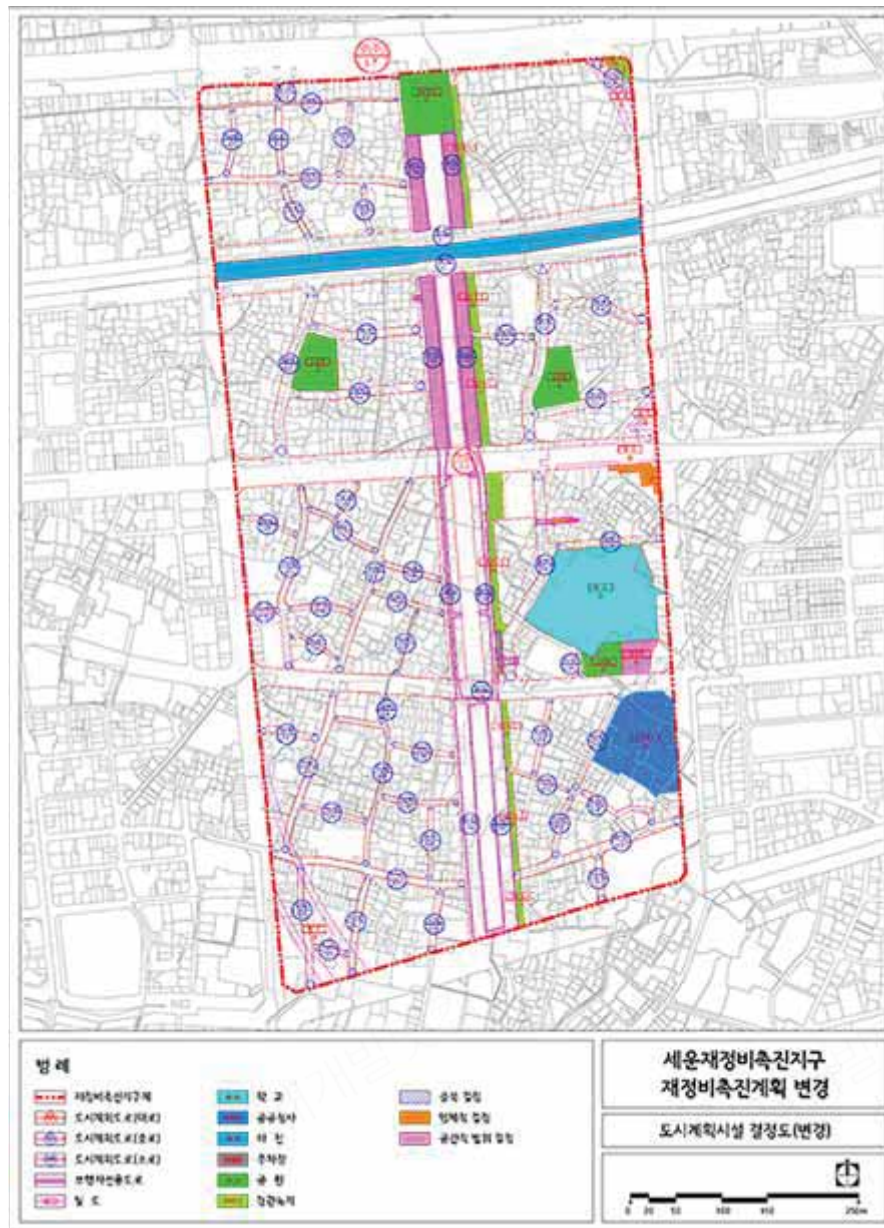
■ 토지이용계획도 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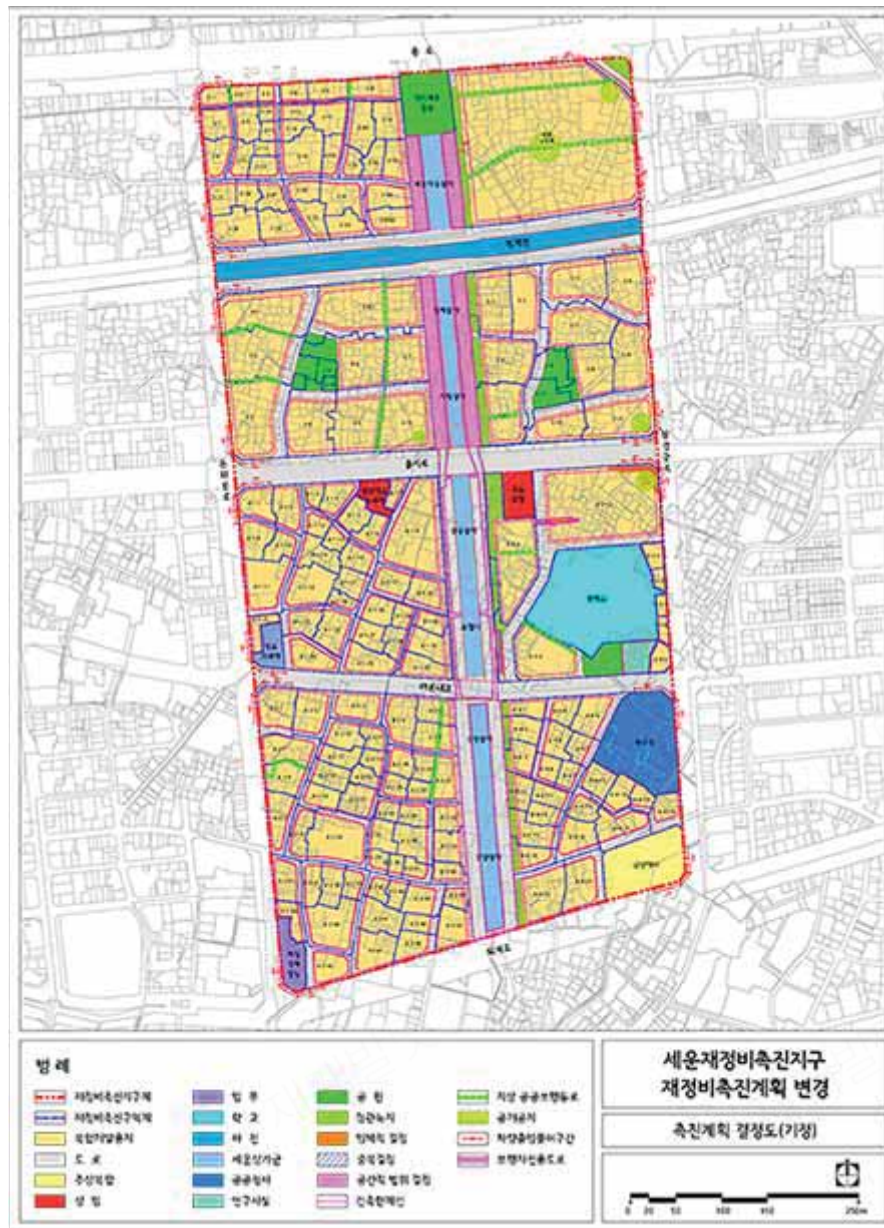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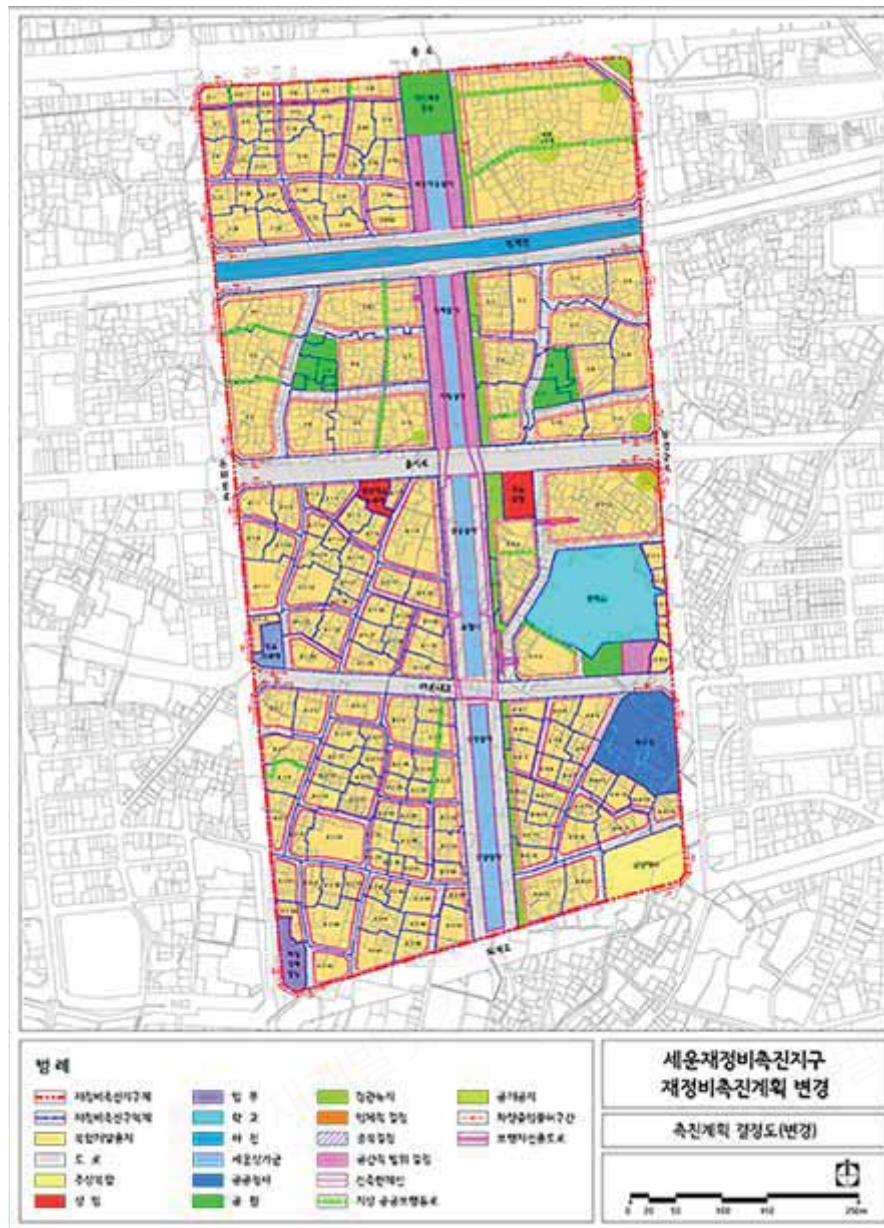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변경)



■ 추진계획 결정도 (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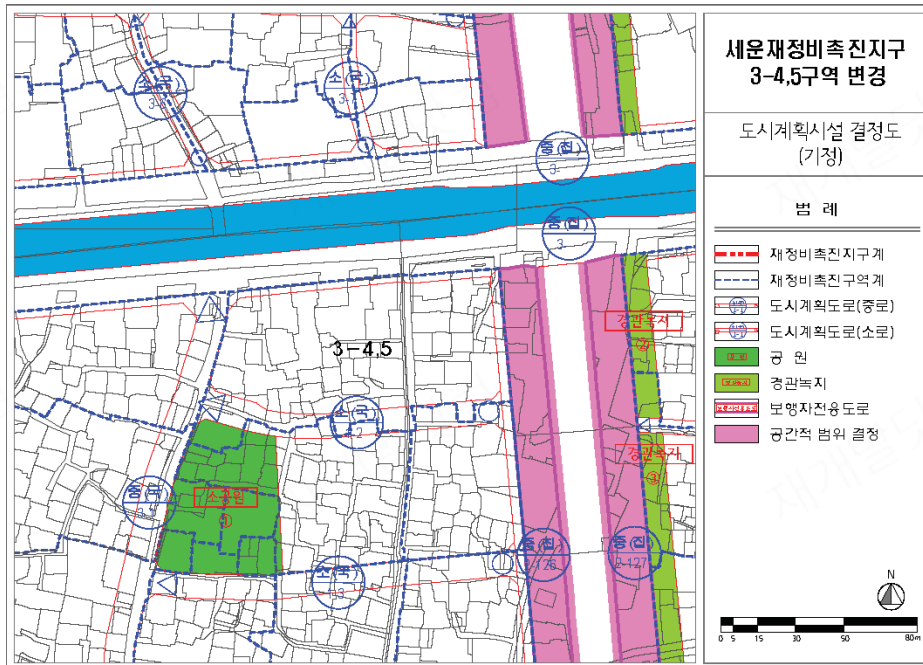


■ 추진계획 결정도 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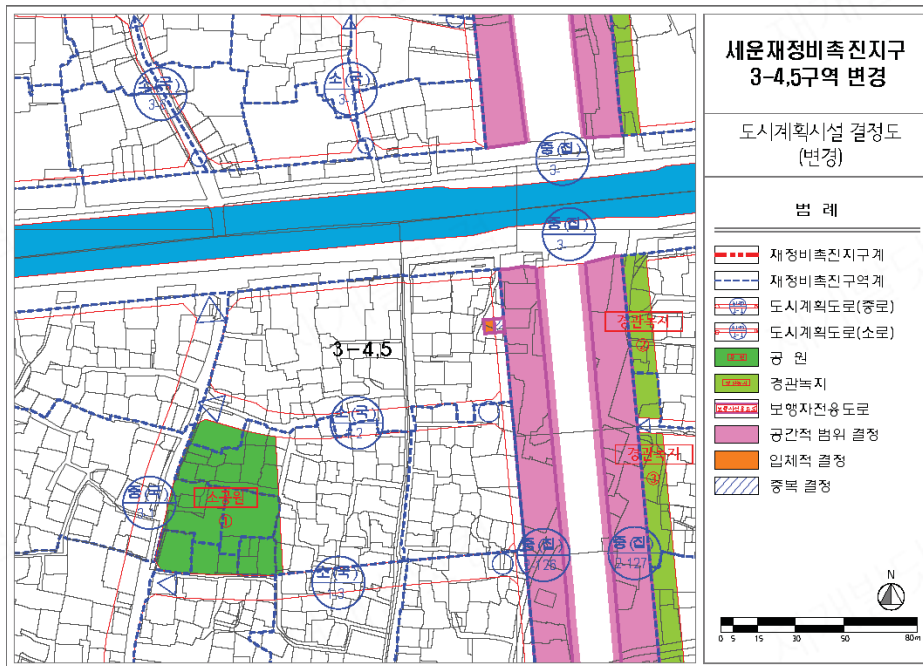


－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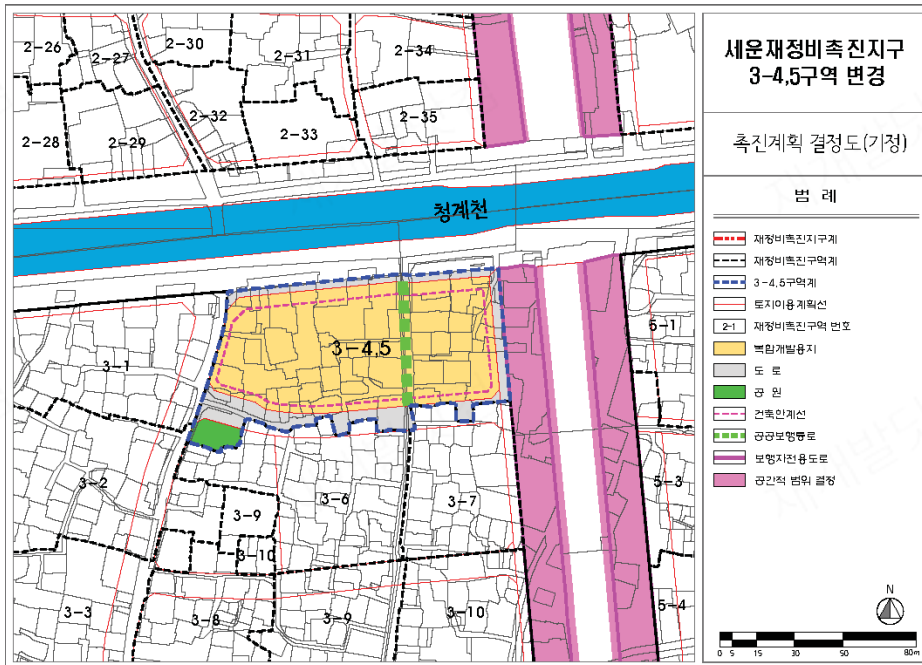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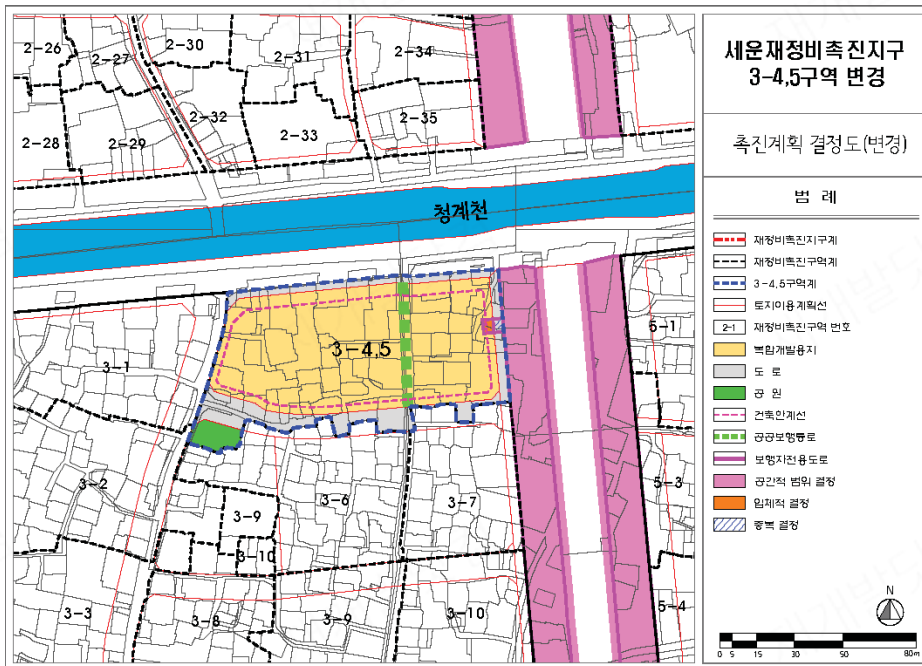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변경)

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(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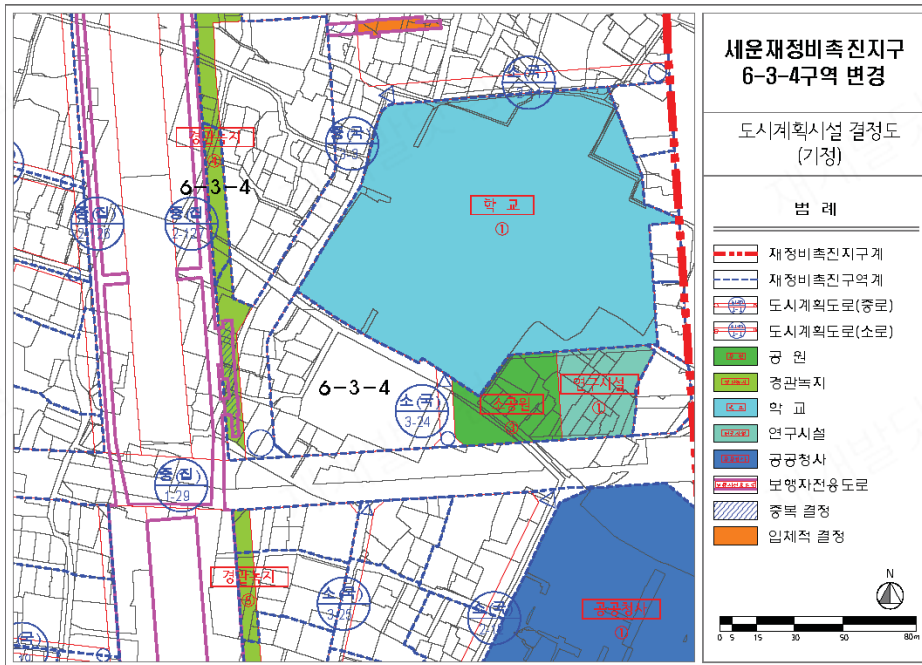


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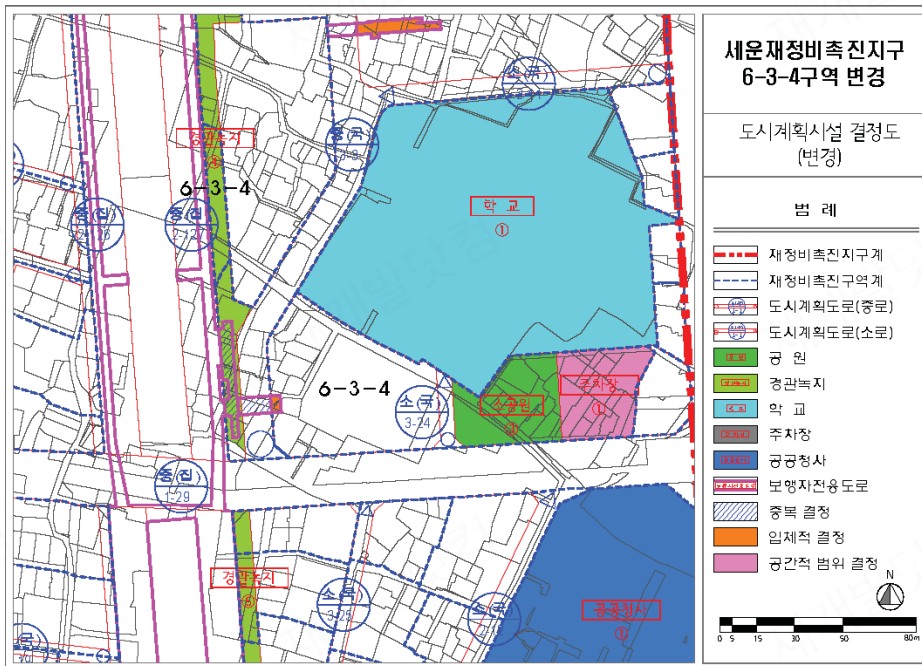


－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기정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(변경)

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변경

촉진계획 결정도(기정)

범례

- 재정비촉진지구계
- 재정비촉진구역계
- 6-3-4 구역계
- 토지이용계획선
- 2-1 재정비촉진구역 번호
- 복합개발용지
- 연구용지
- 도로
- 경관녹지
- 공원
- 건축민개선
- 관광모형통로
- 모형지선용도로
- 장벽 결정

N
0 5 15 30 50 80m

**세운재정비촉진지구
6-3-4구역 변경**

촉진계획 결정도(변경)

법 레

- 재정비촉진지구계
- 재정비촉진구역계
- 6-3-4 구역계
- 토지이용계획선
- 2-1 재정비촉진구역 번호
- 복합개발용지
- 도 로
- 경관녹지
- 라 인
- 건축안계선
- 광공방통로
- 주차장(광간적 범위 결정)
- 임제의 결정
- 중복 결정

중학교

종구청

0 5 15 30 50 80m

N